

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 [나급, 약사] 경력경쟁임용시험 시행계획 공고

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을 다음과 같이 공개모집하니
유능한 분들의 많은 응모를 바랍니다.

2026년 10월 26일

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인사위원회위원장

1. 임용분야 및 선발예정인원

분 야	임용등급	인원	근무기간	담 당 업 무
약사	시간선택제임기제 '나'급	1명	임용일로부터 1년 (주 35시간)	○ 의약과 법정업무(약사법, 마약류 관리법, 의료기기법 등 관련 인·허가 및 지도점검 등) ○ 보건소 진료사업 관련 조제·투약·복약지도 등 약사 업무 ○ 마약류 오남용 예방 교육, 공공심야약국 운영 등 약무 사업 ○ 기타 의약무 행정업무 등 주요사항 ※ 전염병 발생 등 비상시 보건소장 지시업무

※ 근무기간은 예산확보 및 근무실적이 우수할 경우 2년 범위 내 연장 가능

2. 법령 근거

- 지방공무원법 제25조의5(근무기간을 정하여 임용하는 공무원)
- 지방공무원임용령 제21조의3(임용절차 등)
- 지방공무원 인사제도 운영지침
-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지방공무원 인사규칙

3. 응시 자격 요건

※ 기준일: 면접시험 시행 예정일

○ 공통 응시자격 요건

- 지방공무원법 제31조(결격사유) 및 「약사법」 제5조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
-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65조(부정행위자 등에 대한 조치) 및 「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」 제82조(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) 등 기타 법령에 의하여 응시 자격이 정지되지 아니한 자
- 대한민국 국적자로서 채용공고일 현재 주민등록이 말소되지 아니한 자
- 지역·성별 제한 없음 (단, 남자의 경우 병역필 또는 면제자)
- 응시연령: 18세 이상

「지방공무원법」 제31조(결격사유)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공무원이 될 수 없다.

1. 피성년후견인
2.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
3.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(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)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
4.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
5.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
6.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
- 6의2.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「형법」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
- 6의3.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
 - 가. 「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」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
 - 나. 「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」 제74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규정된 죄
 - 다. 「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2호에 따른 스톱킹범죄
- 6의4. 미성년자에 대하여 「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」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또는 「아동·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·청소년대상 성범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부터 20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
 - 가.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(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) 집행이 면제된 날
 - 나.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가 확정된 날
 - 다. 벌금 이하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
 - 라. 치료감호를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
 - 마. 징계로 파면처분 또는 해임처분을 받은 날
7.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
8.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

「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」 제82조(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)

- ① 비위면직자 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.
 1. 공직자가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당연퇴직, 파면 또는 해임된 자
 2. 공직자였던 사람으로서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벌금 300만원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사람
- ② 비위면직자 등은 당연퇴직, 파면, 해임된 경우에는 퇴직일, 벌금 300만원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경우에는 그 집행이 종료(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)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날부터 5년 동안 다음 각 호의 취업제한기관에 취업할 수 없다.
 1. 공공기관
 2.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패행위 관련 기관
 3. 퇴직 전 5년간 소속하였던 부서 또는 기관의 업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영리사기업체 등
 4. 영리사기업체 등의 공동이익과 상호협력 등을 위하여 설립된 법인·단체(이하 "협회"라 한다)

「지방공무원 임용령」 제65조(부정행위자 등에 대한 조치)에 의해 응시자격이 정지된 자

○ 선발 직무분야 응시자격 요건

구 분	응시자격 요건
시간선택제 임기제 나급 (약사)	○ 약사 면허증 소지자로서 아래의 자격요건 중 하나 이상을 갖춘 자 1. 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3년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2. 5년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3. 7급 또는 7급상당 이상의 공무원으로서 2년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
	※ 직무분야 실무경력 -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, 공공기관, 병원, 약국, 제약회사 등 「약사법」에 의한 약사 업무에 종사한 경력 ※ 우대사항 - 한글, 엑셀 등 기본적인 전산 활용이 가능한 사람 - 현장 출장 업무가 가능한 자

※ 경력에 따른 임용 및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의 경우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17조제5항에 따라 시험 공고일 기준 퇴직 후 10년이 경과되지 않아야 함

4. 근무조건 및 보수수준

○ 근무기간: 임용일로부터 1년

- 예산확보 및 근무실적이 우수할 경우 근무기간 최대 2년의 범위 내 연장 가능

○ 보수수준

- 임기제공무원으로 신규 임용되는 자의 연봉은 「지방공무원 보수규정」에 의거 임용등급별 하한액 책정을 원칙으로 하되 채용예정자의 자격, 능력, 경력 등을 고려하여 결정함

채용분야	채용형태	근무시간	급여기준(연봉)
약사	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 (나급)	주 35시간 (1일 7시간)	50,495천원 (2026년 기준)

※ 연봉 외 급여는 「지방공무원 보수규정」 및 「지방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」에 따라 지급

5. 시험일정 및 시험방법

○ 시험일정

시험공고	응시원서 접수	1차 서류전형 합격자발표	2차 면접시험	면접합격자 발표
2026.10.26.(월) ~11.13.(금)	2026.11.16.(월) ~11.18.(수)	2026.11.23.(월)	2026.11.27.(금)	2026.12.8.(화)

※ 부득이한 사정에 의해 시험 일정, 장소 등이 변경될 경우 사전에 응시자에게 개별 통지함

○ 응시원서 접수

- 접수기간: 2026. 11. 16.(월)~11. 18.(수) 9:00~18:00 ※ 점심시간(12:00~13:00) 제외
- 접수장소: 영등포구보건소 3층 의약과
(07260)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당산로 123, 영등포구보건소 3층 의약과
- 접수방법: 방문 또는 등기우편 접수
 - 방문 및 등기우편: 마감일 근무시간(18:00)까지 도착분에 한하여 유효함
- 수 수 료: 영등포구 수입증지 7,000원
 - 영등포구청 1층 민원여권과 7번 창구 방문하여 수입증지를 인증기로 날인
 - 수입증지를 인증하지 않은 응시원서는 무효 처리
 - 우편접수 시 응시원서 수수료는 우체국 '통상환증서' 동봉
 - 응시원서 접수마감일 현재 기초생활수급자, 차상위계층 및 한부모가족보호대상자, 장애인 연금 수급자, 2명 이상의 미성년 자녀가 있는 자는 응시수수료가 면제되며, 접수 시 수입증지 대신 관련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- 응시원서 양식(응시원서, 이력서, 자기소개서 등)은 공고문에 첨부된 양식 사용

○ 시험방법

가. 1차 시험(서류전형): 구 홈페이지 공고

- 당해 직무수행에 관련된 응시자의 자격·경력 등이 정해진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서면으로 심사하여 적격 또는 부적격 판단

나. 2차 시험(면접시험): 개별통보 및 구 홈페이지 공고

- 1차 서류전형 합격자를 대상으로 면접평가 실시
- 직무수행계획서 및 심층면접을 통해 당해 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 및 적격성, 인성 등 역량 종합평가
- 면접순서는 채용원서 접수순으로 하며, 면접일시 및 장소는 영등포구청의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(변경 시 개별통보)

※ 면접자가 요청한 경우, 평가 결과를 종합한 상·중·하의 개수 또는 본인 평균 점수 공개

다. 면접합격자 발표: 개별통보 및 구 홈페이지 공고

- ※ 면접시험 합격자는 채용예정자로서 합격자 등록 후 신원조회 등에서 지방공무원법 제31조의 결격사유가 없고,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인사위원회 채용승인을 받은 자에 한하여 최종합격자로 임용자격이 부여됨
- ※ 최종합격자가 임용포기, 결격사유 등의 사정으로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면접시험에서 차순위로 평정 성적이 우수한 자를 추가 합격자로 결정할 수 있음
- ※ 해당 분야에 적격자가 없을 경우 재공고하여 채용 진행

6. 제출서류

① 응시자 제출서류 목록표(별지 제1호 서식)

- 아래 제출서류 중 응시자가 제출한 서류를 표기하여 제출

② 응시원서 1부(별지 제2호 서식)

- 응시수수료(7,000원): 영등포구청 1층 민원여권과 7번 창구에서 영등포구 수입증지를 구입 후 응시원서 뒷면에 인증기 날인
- 인증기 설치부서: 영등포구청 1층 민원여권과 7번 창구
- 우편접수 시 응시원서 수수료는 우체국 '통상환증서' 동봉

③ 이력서 1부(별지 제3호 서식)

- 이력서상의 경력은 경력증명서에 의해 증명 가능한 것만 인정
- 경력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직장폐업 등의 사유로 증명하지 못한 경우 사업자등록증, 법인 등기부등본,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등 증빙자료 제출

④ 자기소개서 1부(별지 제4호 서식)

⑤ 직무수행계획서 1부(별지 제5호 서식)

⑥ 자격요건 검증을 위한 동의서 1부(별지 제6호 서식)

⑦ 개인정보 수집·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1부(별지 제7호 서식)

⑧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 1부(별지 제8호 서식)

- 미 동의 시 주민등록초본 제출(남자의 경우 병역사항 기재된 것)

⑨ 경력증명서 또는 재직증명서 1부(원본)

- 근무기간, 직위(직급) 및 담당업무, 발급확인자의 성명 및 연락처, 기관의 직인을 반드시 포함하여야 함
- 담당업무: 응시자격요건에 명시된 경력 인정범위 해당업무를 반드시 기재
- 시간제 근무경력일 경우, 반드시 주단위 근무시간을 명시한 경력증명 제출
- 위 사항이 포함되지 않은 경력증명서 제출 시 경력이 인정되지 않을 수 있음

⑩ 최종 학력 졸업증명서 1부

- 대학원 이상 졸업자의 경우 대학교, 대학원 졸업증명서 모두 제출(전공분야 표시)
- 자격·경력 확인 등을 위해 활용되며 시험전형 위원에게 학교명 등이 제공되지 않음

⑪ 약사면허증 사본 1부

⑫ 기타 자기소개서 관련 증빙자료

※ 서류제출 시 주의사항

- ① 경력증명서 등 각종 제출서류는 6개월 이내 발급분에 한하나 법에서 정한 유효기간이 있는 서류의 경우 해당 기간에 한하여 인정
- ② 외국어로 기재된 증빙자료(학력, 경력증명서 등)의 경우, 한글 번역본(공증필)을 반드시 첨부
- ③ 상기 제출서류 중 확인 불분명한 증빙서류에 대해서는 인정하지 않으며, 추가서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음

7. 기타(유의)사항

- 응시희망자는 자격요건 등이 적합한지를 정확히 확인한 후 응시하시기 바랍니다.
- 응시수수료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, 제출된 서류에 기재된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합격 또는 채용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.(다만, 시험주최 측 사정으로 시험취소 시, 접수기간 또는 접수마감일 다음날부터 3일 이내 응시의사 철회 시 응시수수료 전액 반환)
- 해당분야에 적격자가 없을 경우 채용하지 않을 수 있으며, 합격자 통지 후라도 신원조사 및 채용신체검사, 학위검증 등을 통하여 결격사유가 발견될 경우 합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.
- 「지방공무원임용령」 제65조(부정행위자에 대한 조치)에 따라 임용시험에서 부정행위를 하거나, 기타 증빙서류에 허위사실을 기재함으로써 시험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행위를 한 사람은 그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거나 합격 결정을 취소하고, 그 처분이 있는 날부터 5년간 이 영에 따른 시험과 그 밖에 공무원 임용을 위한 시험의 응시자격이 정지됩니다.
- 시험응시와 관련하여 일체의 채용청탁은 금지되며, 청탁을 한 응시자는 청탁금지법에 따라 시험에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.
- 응시원서에 E-mail 주소와 휴대전화번호를 반드시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 (응시원서상의 기재착오 또는 누락이나 연락 불능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불이익은 일체 응시자의 책임입니다.)
- 응시자 제출서류는 최종합격자 공고문에 기재된 기일 내에 응시자가 채용서류의 반환을 청구할 경우, 본인임을 확인한 후 반환합니다. (단, 최종합격자는 제외하며 기일 내 청구하지 않을 시 반환하지 않습니다.)
- 본인의 의사에 따라 임용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소속기관 소재지 관할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고용보험 가입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.
- 공무원연금법 제50조(퇴직연금 또는 조기퇴직연금 지급정지)제1항에 따라 퇴직연금 또는 조기퇴직연금의 수급자가 재채용 시 해당연금 전부의 지급이 정지됨에 유의하여 지원하시기 바랍니다.
- 응시원서 접수 결과 응시자가 선발 예정 인원보다 같거나 적을 경우(서류전형 결과 부적격으로 선발 예정 인원과 같거나 적은 경우 포함)에는 1회 이상 재공고 후 시험을 실시할 수 있습니다.
- 본 공고문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, 변경된 사항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홈페이지 공고 및 개별 통보할 예정입니다.
- 기타 상세한 내용은 아래 연락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.